

투자위험등급 : 1 등급[매우높은위험]						베어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베어링월지급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어링월지급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베어링월지급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베어링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5 년 02 월 07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5 년 03 월 09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 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 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서면문서: 베어링자산운용(주),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붙임] 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 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한 분배금을 정기적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분배금은 예금이자와 같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다양한 경제 변수 및 시장 환경에 영향을 받아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배금은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변경될 수 있으며, 모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보유 증권 부도 발생, 현저한 거래부진, 대량환매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월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0.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으로부터 우선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분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투자 원본에서 마련됩니다. 따라서 분배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원본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11. 이 집합투자기구는 매월 분배금이 지급됨에 따라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고 산정된 과세 이익에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12.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집합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FoFs)입니다. 따라서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가 최초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없이 “베어링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5. 투자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입신청 및 자금납입, 환매청구 및 환매대금 지급, 분배금 지급, 기준가 산정 등이 미국 달러화(USD)로 이루어진 다는 점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6. ESG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ESG 평가결과의 개선, 투자전략의 이행 등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동 펀드의 등록신청서를 포함한 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 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5.02.07.)

베어링 월지급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펀드코드 : EJ035]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베어링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글로벌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베어링 월지급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한 분배금을 정기적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글로벌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이자 수입의 증대 및 자본 이득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피투자 외국 집합투자기구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펀드(Barings Global High Yield Bond Fund)”는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거래되는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또한, 신탁자산의 50% 이상을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에 적극적인 기업이나 ESG 를 개선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 증권(채권·재간접형) / 개방형(중도환매가능) / 추가형 / 모자형 /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0 달러(USD)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 보수·비용 예시 (단위: 달러)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0%이내	0.560%	0.350%	0.880%	1.160%	216	338	465	732	1,4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형(C)	없음	1.010%	0.800%	1.220%	1.610%	164	334	509	878	1,912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0%이내	0.390%	0.180%	0.600%	0.990%	150	255	364	595	1,2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610%	0.400%	0.770%	1.210%	124	252	385	666	1,466

(주 1) 10,000 달러(USD)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0 달러(USD)를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을 [연간 0.60%](피투자집합투자기구 운용보수는 연 0.60% 이내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 비용은 제외)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종류 A 형과 종류 C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2 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2024 년 12 월 말 기준)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해당사항 없음																
운용전문 인력	(2025.02.07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총합	ESG 운용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안동길	1970	책임 운용역	22개	3,432억원 (팀운용)	8.75%	7.76%	8.75%	7.76%	19년 3개월	3년 8개월						
	송유진	1980	부책임 운용역	7개	673 억원 (팀운용)	8.28%	6.98%			14년	3년 8개월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 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각 운용역 간의 성과 차이 및 운용역 성과와 회사 성과 차이는 전략 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1.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 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참조																
	주요투자 위험	<table><tr><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tr><td>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td></tr><tr><td>투기등급 자산 투자위험</td><td>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글로벌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므로 투자적격등급 채권에 비해 높은 금리,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이 수반되며 더 큰 자산가치의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상황의 변화에 더 큰 폭의 가치하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낮은 신용등급은 발행인의 재무상황 악화, 신용상황 악화, 부도 발생 등의 불리한 변경이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보유자들에 대한 발행인의 지급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이로 인하여</td></tr></tabl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투기등급 자산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투기등급 자산 투자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글로벌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므로 투자적격등급 채권에 비해 높은 금리,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이 수반되며 더 큰 자산가치의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상황의 변화에 더 큰 폭의 가치하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낮은 신용등급은 발행인의 재무상황 악화, 신용상황 악화, 부도 발생 등의 불리한 변경이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보유자들에 대한 발행인의 지급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는 높은 신용등급의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채권투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신용위험이 수반됩니다.	
	집합투자 증권 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정기적으로 분배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다양한 경제변수 및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분배금이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한 투자 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세금의 이연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복리운용의 효과 면에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불리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분배되는 분배금에 대해 세금이 원천 징수되므로, 1년에 한번 분배되어 과세되는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과세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유종목에 대하여 부도발생 또는 현저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미달러화 표시 외국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신청 및 자금납입, 환매청구 및 환매대금 지급, 분배금 지급, 기준가 산정 등 미달러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투자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미달러화 이외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미달러화 이외 표시통화의 미달러화 대비 가치변동으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환매 후 미달러화 환매대금을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환차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 오후 5 시 이전 : 3 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방법	· 오후 5 시 이전 : 4 영업일 기준가, 8 영업일 지급
	· 오후 5 시 이후 : 4 영업일 기준가 매입		· 오후 5 시 이후 : 5 영업일 기준가, 9 영업일 지급
환매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 1 좌당 1 센트 (1000 좌당 10 달러) · 산정방법 : (직전일의 자산총액 -부채총액)/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 1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센트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 · 공식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 투자협회 (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과세	분배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거주자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원천징수되며(개인 및 일반 법인 15.4%),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거주자 개인의 금융종합소득(배당, 이자 소득포함)이 연간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투자자는 분배금 지급으로 인한 과세이익에 대하여는 매월 단위로 원천징수되며, 이러한 세금은 결국 투자자가 투자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상환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으므로, 1 년에 한번만 분배금을 지급하는 다른 펀드와 비교하여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조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 자	베어링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8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barings.com/ko)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 조좌
효력발생일	2025.03.09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arings.com/ko)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arings.com/ko)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투자신탁의 명칭 (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베어링월지급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EJ035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EJ036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EJ03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EJ0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EJ0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EJ0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EJ0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EJ0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EJ04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채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까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1좌는 1센트를 기준으로 합니다.)로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판매)기간: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기구로 모집(판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판매)장소: 이 투자신탁은 판매회사 본·지점을 통해 모집합니다. 모집(판매)장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barings.com/ko)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판매)방법 및 절차: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투자신탁의 명칭 (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베어링월지급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EJ035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EJ036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EJ03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EJ0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EJ0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EJ0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EJ0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EJ0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EJ04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투자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베어링자산운용 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29, 7층 (대표전화: 02-3788-05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팀운용

(2025.02.07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총합	ESG 운용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안동길	1970	책임 운용역	22개	3,432억원 (팀운용)	8.75%	7.76%	8.75%	7.76%	19년 3개월	3년 8개월
송유진	1980	부책임 운용역	7개	673억원 (팀운용)	8.28%	6.98%			14년	3년 8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안동길	• ICMA Centre, University of Reading, Msc • 제일투신운용 주식운용팀 (1999.07~2001.09)	• 칸서스 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베어링자산운용(주) 투자솔루션팀	(2008.07~2011.02) (2011.02~현재)
송유진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 도이치자산운용 상품팀 (2003.11~2009.09)	• 우리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 • 베어링자산운용(주) 투자솔루션팀	(2009.09~2014.06) (2015.10~현재)

주1)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없음

주2) 운용중인 공·사모 펀드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 (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 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5) 각 운용역 간의 성과 차이 및 운용역 성과와 회사 성과 차이는 전략 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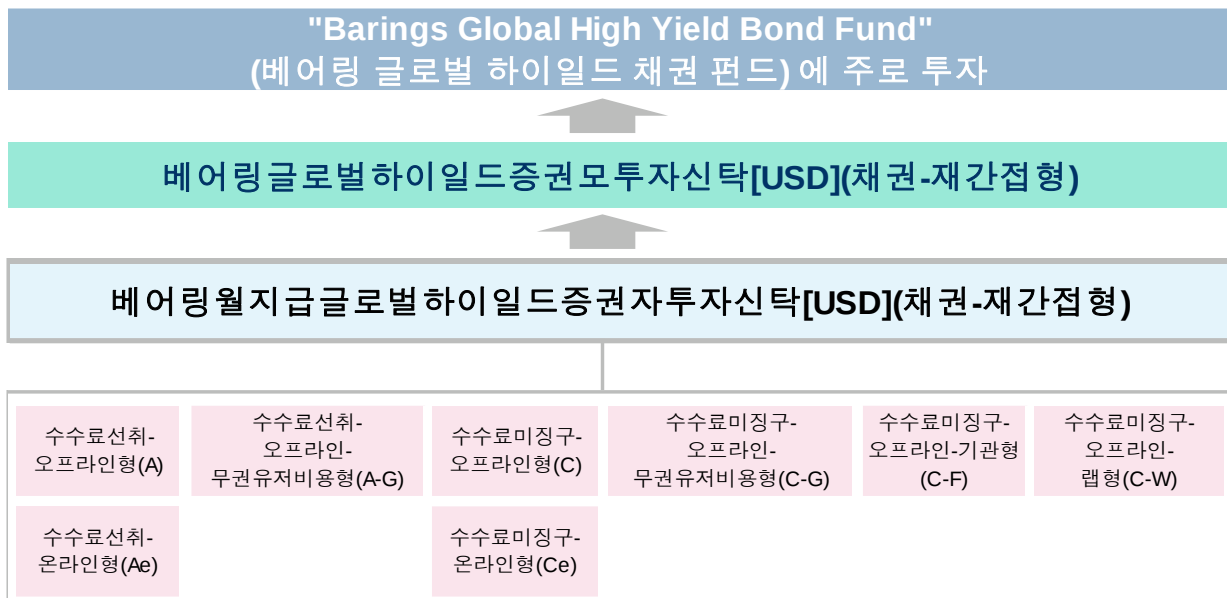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종류형

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 증권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다.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231조에 의거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며,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종류형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미정구(C)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기관(F)	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 수익증권의 Class(종류)별 차이점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

구분 (Class)	수수료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액의 1.00% 이내	-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액의 0.50% 이내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A-G)	납입액의 0.70% 이내	-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형(C)	-	-	-	-
수수료미정구-온라인형(Ce)	-	-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C-G)	-	-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 기관형(C-F)	-	-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 랩형(C-W)	-	-	-	-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Class)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보수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0.150	0.350	0.040	0.020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150	0.180	0.040	0.020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A-G)	0.150	0.250	0.040	0.0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0.150	0.800	0.040	0.02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0.150	0.400	0.040	0.0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0.150	0.560	0.040	0.0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0.150	0.030	0.040	0.0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웹형(C-W)	0.150	-	0.040	0.020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주1) 보수(집합투자기구조로부터 받는 금전)는 순자산총액의 연간 %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2) 보수 외의 기타 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부 집합투자기구의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 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베어링글로벌하이일드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	-------	---------------------------------

주1) 현재 모집합투자신탁 내에 본 자집합투자신탁 외 다른 자집합투자신탁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베어링글로벌하이일드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베어링 엄브렐라 펀드 피엘씨(Barings Umbrella Fund plc)”의 하위집합투자기구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펀드 (Barings Global High Yield Bond Fund)”의 집합투자증권에 신탁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합니다.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거래되는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Fund of Fund)입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베어링 엄브렐라 펀드 피엘씨(Barings Umbrella Fund plc)”의 하위집합투자기구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펀드(Barings Global High Yield Bond Fund)”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투자 외국집합투자기구는 신탁 자산의 50% 이상을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에 적극적인 기업이나 ESG를 개선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펀드(Barings Global High Yield Bond Fund)”는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위험관리	거래되는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고정 이자나 변동이자를 지급하는 미국, 유럽 지역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나, 10% 미만의 범위 내에서 투자등급 채권, 정부 발행 채권, 현금 및 유동성, 이머징 마켓 지역 채권 및 운영 목적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외국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자산의 50% 이상을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에 적극적인 기업이나 ESG를 개선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에서는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비교지수] ICE BofAML Non-Financial Developed Market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USD) 98% + Call 2%
--------------------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제 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 표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투자신탁의 매입신청 및 자금납입, 환매청구 및 환매대금 지급, 분배금 지급, 기준가 산정 등이 미국달러화로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한 분배금을 정기적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배당재원(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분배금, 기타수익, 투자원금 등) 등의 범위 내에서 매월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분배금은 확정된 수익이 아니며 변동될 수 있고, 분배금 지급 방식 및 가입시기에 따라 투자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 수입의 증대 및 자본 이득 창출을 목표로하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외국집합투자업자인 베어링 인터내셔널 펀드 매니저스 (아일랜드) 리미티드 (Baring International Fund Managers (Ireland) Limited) 와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인 베어링 에셋 매니지먼트 리미티드(Baring Asset Management Limited) 가 운용하는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펀드 (Barings Global High Yield Bond Fund)”를 피투자펀드로 선정하였습니다.

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및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투자펀드 선정 조건

- 투자 목적 부합성 : 글로벌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 수입의 증대 및 자본 이득 창출을 목표로하는 투자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
- 운용 투명성 : 피투자펀드의 운용방식과 목적이 명확하고 실제 운용이 이러한 운용목표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
- 거래 유동성 : 피투자펀드의 거래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 및 환매 주기에 부합하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2) 피투자펀드 선정 프로세스

- 정량분석 : 운용규모, 운용기간, 장단기 성과 및 지표, 운용인력 경험 및 규모, 운용보수 등
- 정성분석 : 운용조직 안정성, 위험관리, 고객 서비스 등을 평가
- 펀드실사 : Fact Sheet 및 펀드자료분석 및 필요시 펀드 운용팀과의 커뮤니케이션, 현지 운용사 방문 점검 포함

피투자펀드의 외국 하위집합투자업자인 베어링 에셋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Baring Asset Management Limited)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베어링자산운용의 관계회사입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투자신탁

1)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60% 이상	신탁계약서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베어링글로벌하이일드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②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③	기타	10% 이하, 40% 이하까지 가능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4.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적용예외]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①내지 ③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①내지 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① 이해관계인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나. 모투자신탁

1)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의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 <u>피투자 외국 집합투자증권 관련 사항</u> 펀드명 : “베어링 업브렐라 펀드 피엘씨(Barings Umbrella Fund plc)”의 하위집합투자기구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펀드 (Barings Global High Yield Bond Fund)” 종류 : 증권형 펀드 규모 : \$ 4.277 Billion (2025년 01월 31일 기준) 펀드운용회사 : 베어링 인터내셔널 펀드 매니저스 (아일랜드) 리미티드 (Baring International Fund Managers (Ireland) Limited) 주된 투자대상 : 글로벌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하이일드 채권 편입비중 및 한도 -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거래되는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에 주로 투자 -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에 적극적인 기업이나 ESG를 개선하는 기업에 50% 이상 투자 - 고정 이자나 변동이자를 지급하는 미국, 유럽 지역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나, 10% 미만의 범위 내에서 투자등급 채권, 정부 발행 채권, 현금 및 유동성, 이머징 마켓 지역 채권 및 운영 목적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 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음
②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③ 기타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4.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적용예외]

- 1)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① 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①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ESG관련 투자 대상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신탁 자산의 50% 이상을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에 적극적인 기업이나 ESG를 개선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ESG 평가는 기업에 대한 분석 및 정기적인 경영진과의 교류를 기반으로 한 고유의 리서치를 통하여 수립됩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투자 대상 기업의 ESG 실행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ESG 지표 점수를 평가하고, 이 점수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들을 검토합니다. ESG 지표 점수 평가를 통해 ESG 기준이 긍정적이거나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합니다.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①	이해관계인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투자신탁의 자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바. 투자신탁의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 77 조제 4 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③	계열회사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적용예외]

- 1) 투자대상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불가피 하게 상기 ②의 가목 내지 라목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2) ②의 가목 및 나목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제한 예외]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한된 운용관련 규정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별도로 한도제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 1) 나. 투자제한 ②의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나. 투자제한 ②의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97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해당)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베어링 엄브렐라 펀드 피엘씨(Barings Umbrella Fund plc)”의 하위집합투자기구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펀드(Barings Global High Yield Bond Fund)”에 투자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필요성, 선정기준, 실사(Due Diligence), 투자대상, 투자전략, 기준가 산정방법 등 관련 정보는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인 베어링글로벌하이일드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이하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환위험 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은 미국달러 표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투자신탁의 매입신청 및 자금납입, 환매청구 및 환매대금지급, 분배금 지급, 기준가격 산정 등이 미국달러화로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3)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주로 글로벌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 전략 및 투자한도를 고려하여 ICE BofAML Global High Yield Index 내의 하위지수인 **ICE BofAML Non-Financial Developed Market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를 비교지수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

ICE BofAML Non-Financial Developed Market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USD)X95% + Call 5%

‘ICE BofAML Non-Financial Developed Market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지수 설명

ICE BofAML Non-Financial Developed Market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는 ICE data services에서 발표하는 지수로 미 달러(USD), 캐나다 달러(CAD), 영국 파운드(GBP) 및 유로화(EUR)로 발행되고, 신용등급 (Moody's, S&P, Fitch 3사 평균)이 투자 적격 등급 미만인 회사채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지수는 전체 산업 중 금융업종을 제외하고, 선진국 시장의 채권을 위주로 하며, 개별 발행 채권이 2%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 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위험관리 전략

(1) 리스크관리 체계

리스크관리규정에 투자신탁의 운용뿐 아니라 회사 운영 전반에 걸친 위험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위험을 관리합니다. 리스크관리규정에 의해 일별 수익률과 위반사항을 점검하며, 주별로 펀드수익률과 매매현황, 리스크 지표의 변동 현황을 파악하고 월별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어 성과평가 및 위험분석을 통해 투자의사결정에 참고합니다. 위반사항 발생시 리스크관리팀과 협의하여 신속히 위반사항이 해소되도록 조치하며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행합니다.

(2)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해외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채권시장의 변동 및 외국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종목의 채권가격변동에 의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위험지표를 평가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또한 급격한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유동성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3) 환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 표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투자신탁의 매입신청 및 자금납입, 환매청구 및 환매대금지급, 분배금 지급, 기준가격 산정 등이 미국달러화로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5) 유동성 위험 및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이 투자신탁은 매일 설정환매가 이루어지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유동성 위험과 관련한 비상 상황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는 대규모 환매와 같이 유동성 위험의 증가하는 등의 우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위험단계를 1단계(비상상황 가능성인지 단계), 2단계(비상상황 우려단계), 3단계(비상상황 발생단계)로 나눠 비상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비상조치계획에 명시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해외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펀드에 신탁재산의 60%이상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투자대상이 되는 채권의 가격 변동 및 해당 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국가의 채권의 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이자 수입의 증대 및 자본 이득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하이일드 채권이라 함은 신용평가기관인 S&P 및 Fitch 기준 'BB+이하' 등급 채권, Moody's 기준 'Ba1이하' 등급 채권 및 여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을 포함합니다.

이 투자신탁 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베어링 엄브렐라 펀드 피엘씨(Barings Umbrella Fund plc)”의 하위집합투자기구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펀드 (Barings Global High Yield Bond Fund)”는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거래되는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고정 이자나 변동이자를 지급하는 미국, 유럽 지역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나, 10% 미만의 범위 내에서 투자등급 채권, 정부 발행 채권, 현금 및 유동성, 이머징 마켓 지역 채권 및 운영 목적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 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외국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에 적극적인 기업이나 ESG를 개선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ESG 평가방법]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외부 기관의 ESG 데이터를 활용한 운용사 고유의 ESG 평가 방법을 통해 ESG 에 긍정적이거나 ESG를 개선중인 기업들을 선정합니다. 투자 대상 자산을 평가할 때 발행사가 공시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견 경영진을 직접 접촉하거나, MSCI, Sustainalytics, Bloomberg ESG 등과 같은 외부 ESG 리서치 제공업체를 활용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와 상호작용을 통해 발행사의 ESG 위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ESG 평가항목]

외국집합투자업자는 발행사의 ESG 실행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ESG 지표 점수를 평가하고, 이 점수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들을 검토합니다. 지표 점수는 E(자원 활용 효율성, 환경에 대한 영향, 제조 이력 추적), S(상품 및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 사업 윤리, 직원 만족도) 및 G(경영진의 효율성, 감사 선임의 신뢰도 및 경영진의 책임감) 평가가 포함됩니다. ESG 지표 점수 평가를 통해 ESG 기준이 긍정적이거나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합니다.

[ESG 스코어링]

모든 보유 종목 및 투자 예정 발행사에 대한 ESG 점수를 평가합니다. ESG 등급은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기반하여 평가되고 투자 메모에 기록됩니다. 발행사들은 현재의 ESG 등급과 ESG 전망등급을 모두 평가받습니다. 현재의 ESG 등급은 투자 유니버스 대비 해당 발행사의 현재 지속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전망 등급은 업종별 ESG 현황 대비 해당 발행사의 ESG 관련 모멘텀을 평가합니다. 현재 등급이 높을 경우 투자대상기업은 “긍정적”으로 분류되고, 현재 등급이 보통 수준이며 전망 등급이 개선중인 경우 “개선중” 이라고 간주됩니다.

[관여활동]

외국집합투자업자는 ESG와 관련하여 액티브 운용방침을 채택하고 있으며, 발행사의 기업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관여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관여 활동은 발행사들의 주요 ESG 신용 위험 분야 및 관련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러한 ESG 요소들을 투자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견고한 펀더멘탈, 유리한 ESG 등급,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보유한 발행사를 발굴합니다.

피투자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펀더멘탈 상향식(bottom-up) 신용평가 프로세스를 거쳐 상대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종목들로 운용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해 최고의 상대가치 종목을 발굴하거나 추가적인 자본 이득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투자프로세스]

협력적인 팀운용과 펀더멘탈 투자 접근 방식을 갖춘 글로벌 운용팀을 활용한 확실적인 상대적 가치를 보유한 종목으로 운용 포트폴리오 구성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펀드명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펀드(Barings Global High Yield Bond Fund)
구조	베어링 엄브렐라 펀드 피엘씨(Barings Umbrella Fund plc)의 하위펀드 중 하나

	※ 베어링 엠브렐라 펀드 피엘씨 : 아일랜드에 설립된 개방형투자신탁으로 개별적으로 분리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는 복수의 하위펀드로 구성된 “엠브렐라형(전환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베어링 인터내셔널 펀드 매니저스 (아일랜드) 리미티드 (Baring International Fund Managers (Ireland) Limited)
설정일	2011년 1월 28일
설정지 국가 및 감독기관	아일랜드 / 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
기준통화	미국달러
주요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의 대부분을 북미와 유럽 지역 투자 적격 등급 미만의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총자산 50% 이상을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에 적극적인 기업이나 ESG를 개선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투자목적	글로벌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 수입의 증대 및 자본 이득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동 펀드는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북미 또는 유럽의 인가된 시장에서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북미와 유럽 상품을 중심으로 하이일드 고정 및 변동 금리 회사채무상품 포트폴리오에 투자합니다. 동 펀드는 신탁자산의 50% 이상을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에 적극적인 기업이나 ESG를 개선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ESG 평가방법]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외부 기관의 ESG 데이터를 활용한 운용사 고유의 ESG 평가 방법을 통해 ESG에 긍정적이거나 ESG를 개선중인 기업들을 선정합니다. 투자 대상 자산을 평가할 때 발행사가 공시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견 경영진을 직접 접촉하거나, MSCI, Sustainalytics, Bloomberg ESG 등과 같은 외부 ESG 리서치 제공업체를 활용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와 상호작용을 통해 발행사의 ESG 위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ESG 평가항목] 외국집합투자업자는 발행사의 ESG 실행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ESG 지표 점수를 평가하고, 이 점수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들을 검토합니다. 지표 점수는 E(자원 활용 효율성, 환경에 대한 영향, 제조 이력 추적), S(상품 및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 사업 윤리, 직원 만족도) 및 G(경영진의 효율성, 감사 선임의 신뢰도 및 경영진의 책임감) 평가가 포함됩니다. ESG 지표 점수 평가를 통해 ESG 기준이 긍정적이거나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합니다. [ESG 스코어링] 모든 보유 종목 및 투자 예정 발행사에 대한 ESG 점수를 평가합니다. ESG 등급은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기반하여 평가되고 투자 메모에 기록됩니다. 발행사들은 현재의 ESG 등급과 ESG 전망등급을 모두 평가받습니다. 현재의 ESG 등급은 투자 유니버스 대비 해당 발행사의 현재 지속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전망 등급은 업종별 ESG 현황 대비 해당 발행사의 ESG 관련 모멘텀을 평가합니다. 현재 등급이 높은 경우 투자대상기업은 “긍정적”으로 분류되고, 현재 등급이 보통 수준이며 전망 등급이 개선중인 경우 “개선중” 이라고 간주됩니다. [관여활동] 외국집합투자업자는 ESG와 관련하여 액티브 운용방침을 채택하고 있으며,

	발행사의 기업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관여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관여 활동은 발행사들의 주요 ESG 신용 위험 분야 및 관련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이러한 ESG 요소들을 투자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견고한 펀더멘탈, 유리한 ESG 등급,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보유한 발행사를 발굴합니다. 동 펀드는 투자목적에 맞는 경우, 북미 또는 유럽 이외 국가의 발행인이 미달러나 유로화 이외의 통화로 발행한 하이일드 상품, 투자적격등급 채권, 현금 및 준현금, 예금, 머니마켓상품 (단기기업어음, 은행인수어음, 은행권, 국채, 예금증서 및 중앙은행 요건에 따라 머니마켓상품 적격이 되는 순자산가치의 10% 한도의 특정 대출상품(증권화 또는 비증권화 가능), 현저한 레버리지가 예상되지 않는 전환사채(순자산가치의 10% 한도), 신흥시장의 회사채무상품(순자산가치의 10% 한도),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 그리고/또는 주식(순자산가치의 10% 한도) 등 다른 유형의 채무 상품에 보다 적은 정도로 투자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동 펀드는 투자적격이하 등급의 단일 주권국가(동 국가의 공공 또는 지방 정부 등)가 발행 그리고/또는 보증하는 증권에 그 순자산가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동 펀드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운용 및 헤징 목적을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포함한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파생상품 투자는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정한 조건 및 투자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동 펀드는 금융파생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이용하며, 해당 프로세스의 상세한 내용을 아일랜드 중앙은행에 제공하였습니다.
보수 및 비용	운용보수: 연간 0.60% (Tranche I 기준) * 상기 운용보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이고, 동 펀드의 운용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하향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 보관, 영업 비용: 연간 최대 0.20% 이내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 279 조에 의거하여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해당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모투자신탁의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모투자신탁으로서 미국달러 표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투자신탁의 매입신청 및 자금납입, 환매청구 및 환매대금 지급, 분배금 지급, 기준가 산정 등이 미국달러화로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해당 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라 환위험관리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모투자신탁의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주로 글로벌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투자한도를 고려하여 ICE BofAML Global High Yield Index 내의 하위지수인 **ICE BofAML Non-Financial Developed Market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를 비교지수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ICE BofAML Non-Financial Developed Market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USD) 98% + Call 2%

‘ICE BofAML Non-Financial Developed Market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지수 설명

ICE BofAML Non-Financial Developed Market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는 ICE data services에서 발표하는 지수로 미 달러(USD), 캐나다 달러(CAD), 영국 파운드(GBP) 및 유로화(EUR)로 발행되고, 신용등급 (Moody's, S&P, Fitch 3사 평균)이 투자 적격 등급 미만인 회사채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지수는 전체 산업 중 금융업종을 제외하고, 선진국 시장의 채권을 위주로 하며, 개별 발행 채권이 2%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 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전략

(1) 리스크관리 체계

리스크관리규정에 투자신탁의 운용뿐 아니라 회사 운영 전반에 걸친 위험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위험을 관리합니다. 리스크관리규정에 의해 일별 수익률과 위반사항을 점검하며, 주별로 펀드수익률과 매매현황, 리스크 지표의 변동 현황을 파악하고 월별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어 성과평가 및 위험분석을 통해 투자의사결정에 참고합니다. 위반사항 발생시 리스크관리팀과 협의하여 신속히 위반사항이 해소되도록 조치하며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행합니다.

(2)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해외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채권시장의 변동 및 외국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종목의 채권가격변동에 의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위험지표를 평가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또한 급격한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유동성을 유지 할 예정입니다.

(3) 환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 표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투자신탁의 매입신청 및 자금납입, 환매청구 및 환매대금지급, 분배금 지급, 기준가격 산정 등이 미국달러화로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5) 유동성 위험 및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이 투자신탁은 매일 설정환매가 이루어지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유동성 위험과 관련한 비상 상황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는 대규모 환매와 같이 유동성 위험의 증가하는 등의 우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위험단계를 1단계(비상상황 가능성인지 단계), 2단계(비상상황 우려단계), 3단계(비상상황 발생단계)로 나뉘어 비상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비상조치계획에 명시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투자대상이 되는 채권의 가격 변동 및 해당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해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국가의 채권의 가격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이차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계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미달러화 표시 외국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신청 및 자금납입, 환매청구 및 환매대금지급, 분배금 지급, 기준가격 산정 등이 미달러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투자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미달러화 이외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미달러화 이외 표시통화의 미달러화 대비 가치변동으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환매 후 미달러화 환매대금을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변동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위험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상품의 특성상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계약종료시점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계약을 차월물 등으로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이전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대출 (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대출(이하 콜론이라 함)은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 매입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율 축소 적용 등으로 인해 수익이 당초 기대했던 수익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고위험편드 투자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높은 수준의 경상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로 S&P나 Fitch 기준 BB+이하 등급 이하 이거나 집합투자업자의 견해로 유사한 신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타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더 큰 가격변동위험 및 원본손실위험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는 그 특성상 장기투자로 생각되어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는 투자자에게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투기등급자산 투자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글로벌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므로 투자적격등급 채권에 비해 높은 금리,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이 수반되며 더 큰 자산가치의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상황의 변화에 더 큰 폭의 가치하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낮은 신용등급은 발행인의 재무상황 악화, 신용상황 악화, 부도 발생 등의 불리한 변경이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보유자들에 대한 발행인의 지급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는 높은 신용등급의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채권투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신용위험이 수반됩니다.
부도자산 등의 평가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자산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 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하여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산 상각을 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산상각에 따른 평가액은 계속 지속됨을 의미하진 않으며 이후 발행사의 회생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또는 발행사의 청산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하이일드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 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하이일드 채권 등은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 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큼니다. 더욱이 이 투자신탁은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 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산 전체의 현금화가 요구되는 경우, 일단위로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같은 특정 자산은 즉시 현금화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환매요구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처리될 것 입니다.
신용등급 하락위험	경제 상황이나 해당 종목이 속한 업종의 여건 또는 해당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투자대상 종목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글로벌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은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세법에 의한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하므로 특정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정기적으로 분배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다양한 경제변수 및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분배금이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한 투자 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분배금액은 이 투자신탁이 실제 보유한 종목에서 발생한 분배 재원 및 여타 요인에 따라 매월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세금의 이연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복리운용의 효과 면에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불리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분배되는 분배금에 대해 세금이 원천 징수되므로, 1년에 한번 분배되어 과세되는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과세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유종목에 대하여 부도발생 또는 현저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신뢰성	신용등급은 개인이나 회사의 과거신용과 금융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입니다. 신용등급은 Standard & Poor's 나 Fitch Ratings 와 같은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하며 AAA, B, CC 와 같은 문자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며 증권(투자자산)의 가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측정수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증권(투자자산)에 투자한 투자신탁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은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당해 국가의 급격한 정치·경제적 변화로 인해 투자신탁 자산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홍시장 국가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신홍시장 회사 채무상품에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홍국가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가에 대한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정치·경제적 위험 신홍시장 국가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은 법률, 회계제도, 정부규제 등의 급작스런 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자산가치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역사가 짧은 국가의 경우 재정·금융정책 운영 미숙 등으로 해당국 금융시장 전체가 부정적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로 인해 더욱 큰 투자 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률위험 신홍시장 국가의 경우 각종 사법제도의 미정착으로 인해 조세제도를 포함한 법률제도에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법률제도를 통한 상환 청구 사유발생시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매연로 기회비용 발생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회계위험 신홍시장 국가의 경우 회계기준이 국제기준과 다를 수 있어 각종 재무제표 수치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시 정보의 범위가 국내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재무정보는 기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 분석 시 그 결과의 신뢰성이 선진국가에 비해 낮을 수도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 일부 신홍시장 국가의 경우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이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불리한 가격으로 자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여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처분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포트폴리오 조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결제위험 일부 신홍시장 국가의 경우 증권 등의 거래 시 결제 절차의 미발달로 인해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결제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의 매매가격 신뢰도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송금에 필요한 정부 승인의 지연 또는 거절로 환매연기가 돼 이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이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시스템 위험 일부 신홍시장 국가의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소의 운영미숙과 시스템 낙후로 인해 매매정지 등이 선진국가에 비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정지 등의 사건은 주식 등의 평가를 원활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유동성위험을 증대시켜 환매연기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이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환율 급변동 위험 일부 신홍시장 국가의 경우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높은 수출의존도 등으로 통화 가치가 선진국 통화에 비해 크게 변동하여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전위험 신홍시장 국가의 경우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적 요인 및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수축 등으로 통화의 환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시장으로의 자금의

	이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전지연 등으로 인한 환매연기로 기회비용 발생이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조세위험 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선진국가에 비해 조세제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산이 처분되는 시기에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와의 성과 차이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유동성 관리 목적을 위해 유동성 자산에 투자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조정 (Swing Pricing) 정책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가격조정(Swing Pricing)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펀드의 대량 매입과 환매에 관련되는 비용을 당일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장기 투자자들을 희석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특정일에 대량 순매입에 대응하여 펀드 기준가를 상향조정할 수 있고, 대량 순환매에 대응하여 펀드 기준가를 하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 조정 시에는 예상 시장 스프레드, 세금 및 수수료, 해당 조정이나 투자자산 처분 관련 기타 거래 경비 등이 감안될 수 있습니다. 가격 조정액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2%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조정에 따라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재산 대부분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 투자자의 매입 또는 환매 청구가 청구 받은 당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청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기존 수익자 또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평가시점에 환매될 수 있는 순주식수를 외국 집합투자기구 순자산 가치의 10%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이연지급 방침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순자산 가치의 10%를 초과하여 환매 요청된 주식의 초과분은 다음 거래일로 이월되어 환매됩니다.
ESG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통합 적용 및 ESG 촉진 관련 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정보를 펀드 운용 프로세스에 통합합니다. 또한 ESG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위해 비즈니스 관행에 긍정적 영향을 주거나 직접 투자를 통해 ESG를 촉진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ESG 정보를 분석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ESG 정보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전략의 집합투자기구와 투자 성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SG 위험에 대해서 피투자 집합투자업자는 내부 리서치 평가와 더불어 ESG 정보를 제공하는 제삼자 전문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습니다. 투자 여부를 평가할 때 집합투자업자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할 수도 있는 정보 또는 데이터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ESG 관련 정보나 ESG가 적용된 방법에 대한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 합리성, 완전성 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ESG 개념이나 주제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도와 사회적 인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ESG 기반의 투자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집합투자기구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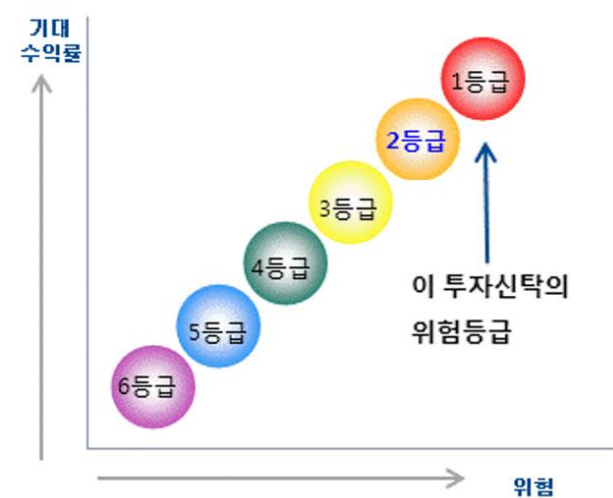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 투자대상국가의 휴일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국가의 휴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 및 외환거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환율제도에 따른 위험	일부 국가의 통화가치는 자유변동환율제도에 의해 그 가치가 변동되고, 일부 국가의 통화가치는 미국 달러화 등의 환율에 연동되어 그 가치가 변동됩니다. 이 경우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국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원/달러 선물 등)을 헤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위험 헤지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부재하는 경우, 투자대상 정책당국이 외환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대상 정책당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연동통화 대비 평가절하시키는 경우 등의 이유로 환헤지의 유효성은 약화될 수 있고, 이 경우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지어는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수익증권 및 잔존 수익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가입클래스 변경 위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클래스 가입자격 충족여부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가입한 클래스를 다른 적절한 클래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체계 등의 변경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전환 및 해지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 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베어링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추가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에 따른 자금유입은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 위험	이 투자신탁은 초기 설정규모가 적정규모에 미달하거나 환매 등으로 인하여 설정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운용실적 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세금 및 규정 등 제도적 위험	이 투자신탁이 운용되는 기간 중 법률, 세금 및 규정 등의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운용중인 투자신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규정이 제정되는 경우,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증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증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 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해외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상황의 변화 및 시장 변동에 연동되어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 등급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증권으로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한단계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이 투자신탁은 **6단계 등급 체계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채권 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설정 후 3년 경과 이후 결산일 도래 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추후에도 매 결산 시 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1) 고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2) 중위험자산 :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3) 저위험자산 :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4) 상세 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 및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다만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및 각 판매회사의 자체 상품위험등급에 따라 각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위의 투자위험등급과 상이한 투자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 달러화(USD)로만 매입 신청 및 자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가입자격 내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온라인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선취 판매 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미징구)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온라인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미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무권유저비용형(C-G)	금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선취판매 수수료 미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50만달러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100만달러 이상 매입한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웹형(C-W)	가.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 나.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다.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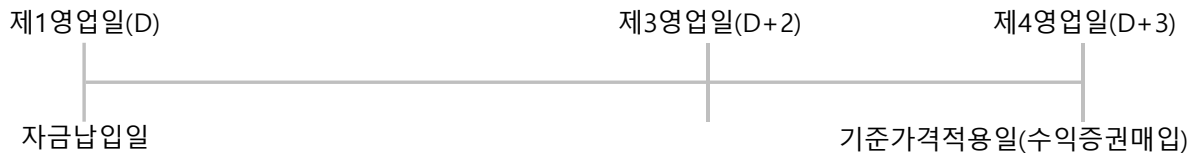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①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매입좌수는 익영업일에 확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센트로 하여 10달러로 공고합니다.

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과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판매회사로부터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마켓타이밍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마켓타이밍 또는 이와 관련된 과도한 매매, 단기매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켓타이밍은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의 불완전성, 결합 또는 시차를 이용하는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간의 매입, 환매행위를 의미합니다.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의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거나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다음의 자를 의미합니다.

-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미국이민귀화국(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된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쉽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쉽은 제외합니다.
-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 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신탁신탁을 의미합니다.

나. 환매

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매 불가	환매 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환매수수료 미발생
X	X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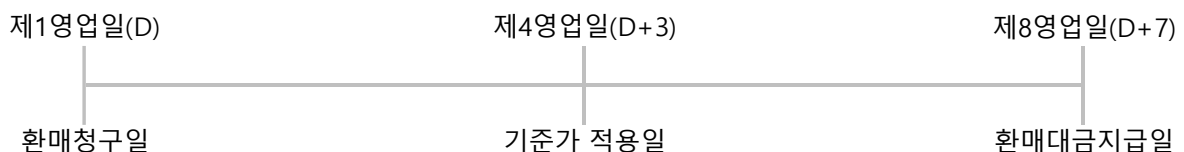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 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 달러화(USD)로만 환매청구 및 환매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제1영업일(D)

제5영업일(D+4)

제9영업일(D+8)

환매청구일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증권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영업일 전일(오후5시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8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①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

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투자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③ 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④ 환매연기사유 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8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를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일부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투자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할 날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은 나머지 자산(이라 "정상자산"이라 함)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내용을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전환절차: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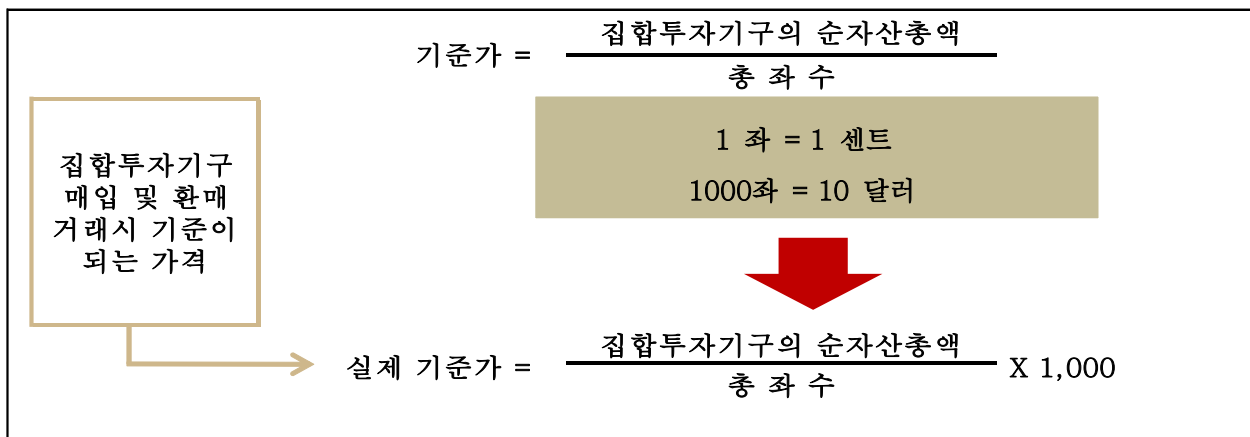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구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 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000좌 단위로 센트 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센트 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센트로 하여 10미달러로 공고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계산·공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은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좌 단위로 센트 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센트 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공시 - 서류공시: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arings.com/ko)·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투자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투자신탁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환율 변동의 영향의 차이로 환헤지형 자투자신탁과 환헤지하지 않는 자투자신탁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기준가 산정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경우 다른 시간대에 있는 시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을 평가할 때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 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 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대표이사, 주식운용 팀장, 채권운용 팀장, 준법감시인, 펀드오퍼레이션 팀장 등
- 2) 업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수탁재산의 적정가치를 유지하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결정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등 부실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출자전환주식 등 시장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 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법 제192조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평가오류의 수정 또는 공정가격 산정이 곤란한 집합투자재산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9.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10. 기타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주요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비상장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상기 상장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⑨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채권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
⑩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
⑪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시에는 모투자신탁의 평가 당일 순자산가액(1좌당 기준가격)으로 평가

⑫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을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사로부터 제공되는 환율정보 이용가능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보수는 미국 달러화(USD)로 지급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Class)	수수료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액의 1.00% 이내	-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액의 0.50% 이내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A-G)	납입액의 0.70% 이내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C-G)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형(C-F)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	-	-	-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Class)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보수	총 보수	(동종유형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총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A)	0.150	0.350	0.040	0.020	0.560	0.880	-	0.560	1.160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150	0.180	0.040	0.020	0.390	0.600	-	0.390	0.990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A-G)	0.150	0.250	0.040	0.020	0.460	-	-	0.460	1.06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 (C)	0.150	0.800	0.040	0.020	1.010	1.220	-	1.010	1.61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 (Ce)	0.150	0.400	0.040	0.020	0.610	0.770	-	0.610	1.21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C-G)	0.150	0.560	0.040	0.020	0.770	-	-	0.770	1.37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형(C-F)	0.150	0.030	0.040	0.020	0.240	-	-	0.240	0.84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웹형(C-W)	0.150	-	0.040	0.020	0.210	-	-	0.210	0.810	-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3) 일반적으로 증권거래비용은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거래비용, 지급수수료 등을,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의미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의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USD)
증권거래비용	신규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금융비용	신규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6)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 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을 [연간 0.60%](피투자집합투자기구 운용 보수는 연 0.60% 이내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 비용은 제외)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7)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2024년 12월 말 기준)을 의미합니다.
- 주8)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ESG 관련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평가 비용을 지급하나, 그 비용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 1)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2)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 ①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 ②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 ③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④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⑤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 관련비용
 - ⑥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⑦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⑧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⑨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3)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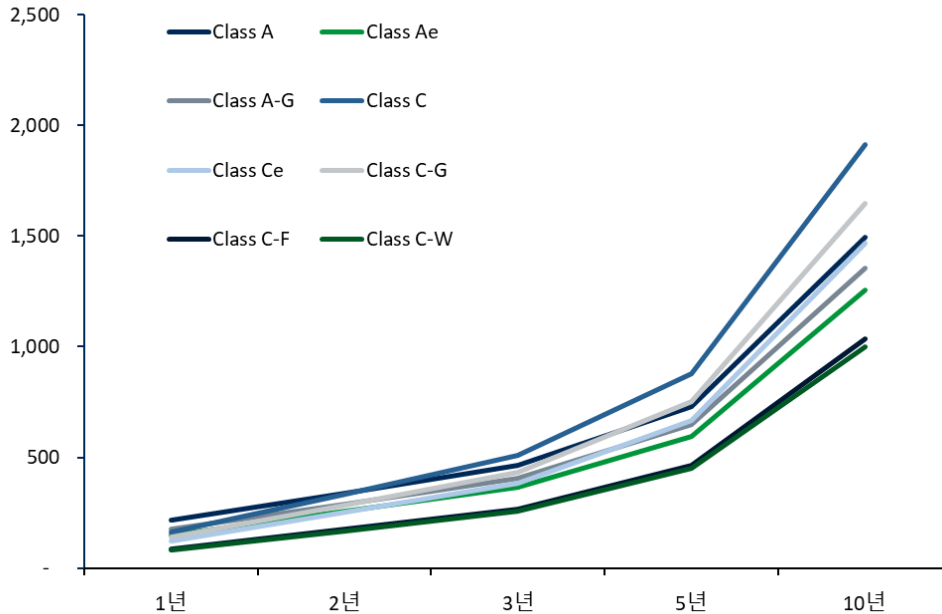
①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 관련비용

<10,000달러(USD)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총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달러 USD)

구 분		투자기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6	215	277	409	79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16	338	465	732	1,494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9	131	174	268	54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0	255	364	595	1,257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6	165	216	325	64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7	289	405	651	1,3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3	211	322	559	1,23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4	334	509	878	1,91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2	128	196	341	76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4	252	385	666	1,4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9	161	246	428	95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0	285	435	751	1,6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형(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	50	77	135	30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6	175	268	466	1,0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	44	68	118	26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3	169	259	450	1,002

주1) 투자자가 10,000달러(USD)를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을 [연간 0.60%](피투자집합투자기구 운용보수는 연 0.60% 이내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 비용은 제외)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종류A 수익증권과 종류 C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 1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① 투자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미국달러화)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다음 설명은 본 투자설명서의 작성일 당시의 세금관련 내용으로 국내법과 국내의 세무관행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 및 해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에 관한 설명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한 수익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임을 전제로하여 작성된 것으로 과세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의 과세결과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투자자 개인의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에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②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소득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③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②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분배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거주자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되며, 판매회사가 원천 징수합니다. 거주자 개인의 금융종합소득(배당, 이자 소득포함)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다. 월지급 펀드의 분배금

※ 이 집합투자기구는 안정적인 월 분배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배하기로 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분배하므로 분배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변동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분배하기로 정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원본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 월 분배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으로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2. 어떤 경우에는 월 분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경우에 따라 월 분배금은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4.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월 분배금액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표 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기준가격과 함께 과표 기준가격이 상승되는 경우에는 과세효과로 인하여 실제로 투자자가 받는 확정 월 분배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월 분배

월 분배금은 아래의 분배금 지급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이익으로부터 우선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분배금은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월 분배금 결정시, 투자시점이 각기 다른 투자자의 수익률을 별도로 고려하여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편입하는 피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채무증권의 추정이자수익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미국달러화)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모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총 투자이익의 상당액을 분배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 안정적 분배금 지급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원본에서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월 분배금은 고정된 금액이 아닌, 모펀드가 투자하는 피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채무증권의 추정이자수익, 당시의 경제상황, 자본금에 대한 장기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안정적인 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월 결정됩니다.

분배기준일

최초 분배기준일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익월 20일로 하며(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최초 분배기준일은 신규 발행일 익월 20일) 그 이후에는 매월 20일로 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합니다.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은 분배기준일(D)로부터 제5영업일(D+4)에 지급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분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탁업자가 수령하는 날 이후 수익자에게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분배금 지급 연기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1)에 의한 분배금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지급일에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분배금 미지급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① 증권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분배금에 충당할 현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 ②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에 충당할 현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 ③ 천재·지변 및 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에 충당할 현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분배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적인 재량으로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평가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의 100%까지 잠식된 경우에도 분배금의 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판매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분배금 지급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분배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분배금 지급을 재개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분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배금 지급연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분배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월지급 펀드의 과세 위험

투자자는 분배금 지급으로 인한 과세이익에 대하여는 매월 단위로 원천징수되며, 이러한 세금은 결국 투자자가 투자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상환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으므로, 1년에

한번만 분배금을 지급하는 다른 펀드와 비교하여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조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수익증권의 매입, 보유, 전환, 양도, 환매 및 기타 분배 등(이하 “관련사건”이라 함)에 대해 적용되는 거주지 혹은 설립지 법률에 의한 세금에 관하여 정통해야 합니다. 투자신탁 또는 본 문서의 제 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어떠한 당사자도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과세 결과에 대하여 보증 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과세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과 관련 당사자들은 관련 사건에 따른 과세결과나 관련 사건으로 야기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최초설정일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관계로 재무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초설정일 이후 1년 경과되지 않아 회계법인으로부터의 회계감사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실적 및 환매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수익률 추이(세전기준)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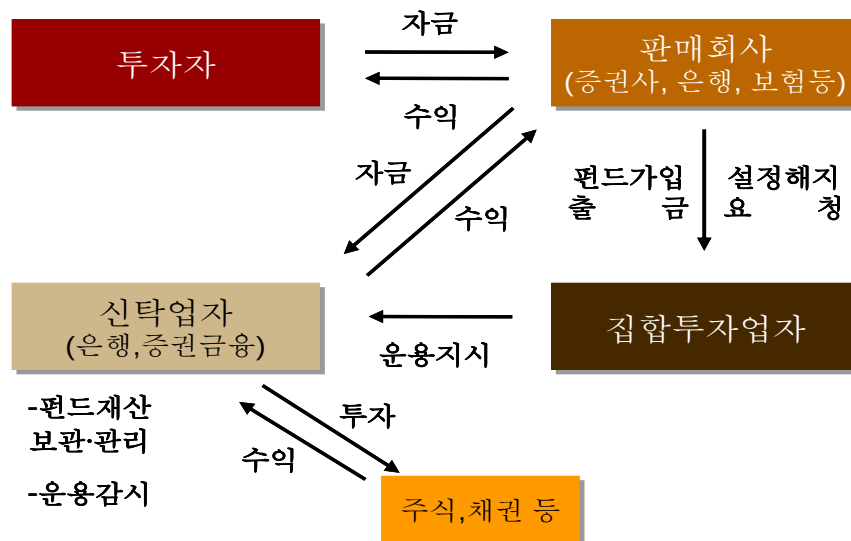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 해당사항 없음

라. ESG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의 이행현황

피투자 외국집합투자기구의 ESG 전략은 충분히 이행되고 있으며, 해당 펀드의 전략의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중요한 ESG요소와 관련하여 투자대상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행동 변화를 위해 투자대상 기업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관여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과 개선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관여의 결과로 인한 투자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투자 외국집합투자기구의 ESG 투자전략 이행 현황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베어링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04523) 서울시 중구 을지로29, 7층 (02)3788-0500 / www.barings.com/ko	
회사연혁	1999.02 1999.03 2002.04 2004.07 2013.03	자산운용사 허가 취득 및 등록(자본금 70 억원) SEI Investments, IFC 와 합작 자본금 증자(자본금 120 억원) MetLife Inc. Holdings가 지분 인수(34.0%) Baring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가 지분인수(100%)
자본금	120억원	
주요주주현황	Baring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100%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 ①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②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③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FY 2024 2024.12.31 현재	FY 2023 2023.12.31 현재	항 목	FY 2024 2024.01.01~ 2024.12.31	FY 2023 2023.01.01~ 2023.12.31
유동자산	96,209	88,943	영업수익	38,215	31,773
비유동자산	2,785	3,876	영업비용	18,142	17,402
자산총계	98,994	92,819	영업이익(손실)	20,073	14,371
유동부채	9,384	9,029	영업외수익	0	2,519
비유동부채	1,155	2,260	영업외비용	0	0
부채총계	10,539	11,289	경상이익(손실)	20,073	16,889
자본금	12,000	12,000	특별이익	0	0
이익잉여금	76,405	69,530	특별손실	0	0
자본조정	0	0	법인세 비용	20,073	16,889
자본총계	88,405	81,530	차감전순이익	4,198	3,490
부채 및 자본총계	98,994	92,819	당기 순이익(순손실)	15,875	13,399

라. 운용자산규모 (2025.02.07 현재, 단위: 억원)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MMF	혼합자산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투자계약	재간접					
수탁고	13,854	707	2,160	0	769	0	2,662	0	456	20,608

주1)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운용자산 제외한 수치임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신한은행
주소 및 연락처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대경빌딩 (02)1599-8000 / www.shinhan.com
회사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2) 주요 업무

- ①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신탁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268조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⑧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⑨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의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 층 (02) 6714-4600 https://www.hanais.co.kr
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2) 주요 업무

① 주요 업무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및 기준가격의 통보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 자산평가㈜	NICE 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110-730) 서울 종로구 율곡로88 (운니동 98-5) 삼환빌딩 4층 (02)399-3350 www.koreaap.com	(150-88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4층 (02)3215-1400 www.bond.co.kr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 (02)398-3900 www.npricing.co.kr	(110-778)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빌딩 4층 (02) 721-5300 www.fnpricing.com
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2)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마. ESG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를 둡니다.
- ② 투자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투자자총회의 소집

- 투자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투자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게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투자자총회는 출석한 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 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투자자의 의결권과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시행령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간주의결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다. 투자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라.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투자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투자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투자자총회(이하 "연기투자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투자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투자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2항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적용합니다. 연기투자자총회의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분의 1이상"으로 적용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투자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 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투자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투자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시행령 제 222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투자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인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투자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칭),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② 투자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③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④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⑤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⑤ 임의해지 ③과 ④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⑥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베어링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집합투자업자가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 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 87 조제 8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대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합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을

③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 87 조제 2 항 및 3 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 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 거래 증권사 및 선물회사의 선정기준은 비용/ 중개능력 ■ 비용 1. 국내 채권시장의 특성상 중개수수료(brokerage fee)는 증권사별 경쟁에 의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거래에 따른 명목 비용은 동일함 2. 비용(Cost) 개념은 단지 중개수수료(brokerage fee)로 한정하지 않고, 거래 지연에 따른 시간비용(timing cost)과 체결실패에 따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할 경우 중개회사별로 거래비용(Cost)이 달라질 수 있음 ■ 중개능력 1. 호가의 정확성과 신속한 체결 능력이 증권사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 2. 중개회사의 팀워크와 개별 브로커의 능력을 감안하여 거래 우선순위 결정 ■ 중개회사의 안정성 1.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고려 2. 매매와 관련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회사 - 당사는 매 분기별로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Analyst), 트레이더의 브로커(Broker) 평가회의에 따라 중개회사를 평가 하고 다음 분기 거래 중개회사를 결정함 - 결정에 따른 중개회사별 거래순위 기준(guideline)을 월별로 점검하고 차이 원인 등을 분석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손실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으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한 인덱스형투자신탁입니다.
파생상품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증권, 부동산 및 특별자산 등에 제한없이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합니다.)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와 일부 유동성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일별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를 말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사모펀드와 일부 요건을 충족한 공모펀드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	신탁계약이 종료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펀드의 환매를 청구할 경우, 판매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환매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환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